

## ◆ 각 면허시험장 부대시설의 특혜자내역

구 분	소재지	사용용도	면적(m <sup>2</sup> )		층별위치	특혜자
			토지	건물		
강남면허시험장	998-1 강남구 대치동	사무실	55.53	55.53	4층 중 3층	경찰공제회 서울사무국장
		신체검사실	142.47	142.47	1층 중 1층	경찰공제회 서울사무국장
		사진실	36.364	36.364	4층 중 2층	경찰공제회 이사장
		식당(매점)	211.23	211.23	4층 중 지하 1층	서울경찰무궁화금고
도봉면허시험장	580-9 노원구 상계동	신체검사실	138.84	138.84	3층 중 지하 1층	경찰공제회 서울사무국장
		사진실	81.323	84.323	3층 중 1층	경찰공제회 이사장
		식당(매점)	349	349	3층 중 지하 1층	서울경찰무궁화금고
강서면허시험장	205-1 강서구 의발산동	신체검사실	114.38	114.38	3층 중 지하 1층	경찰공제회 서울사무국장
		사진실	21.488	21.488	3층 중 1층	경찰공제회 이사장
		식당(매점)	247	247	2층 중 1층	서울경찰무궁화금고
서부면허시험장	438 마포구 상암동	신체검사실	184.5	184.5	2층 중 2층	경찰공제회 서울사무국장
		사진실	36.364	36.364	2층 중 1층	경찰공제회 이사장
		식당(매점)	400	400	2층 중 1층	서울경찰무궁화금고

여섯째,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이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업무이므로 4개 면허시험장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경찰청에 무상 임대하되,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재산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(잡종재산의 대부)제1항에 따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9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. 이외에는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경쟁입찰에 부쳐져야 합니다.

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.

일곱째, 차제에 서울시의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본청 각 실·국 및 사업소의 47개 관리관과 25개 구청의 재산담당자에 대해서 서울시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·지도해야 한다고 봅니다. 특히 그 동안 민선시대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임의계약하여 사용해 온 재산이 없는지를 집중 조사하여 재산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.

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.

— 풍치지구와 관련 —

문제는 첫째, 1941년 일제가 시가지계획령으로 풍치지구를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지구의 지정과 해제가 균형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.

예를 들어보면 북한산 주변 일대는 풍치지구로 지정한 반면, 관악산, 수락산 일대는 풍치지구가 없는 등 지구지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는 점이며, 77년 일제 정비시와 89년 일제 정비시에 대규모로 해제된 바 있는데 그 기준과 잣대가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.

예를 들면 89년의 일제 정비시 소규모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해제 대상이었으나 당시에 인왕지구는 청와대와 가깝다는 이유로 대부분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또한 각종의 재개발사업 등으로 해제된 바 있는데 이 또한 상궤를 벗어나고 있습니다.

서울시의 경우 풍치지구의 건축조건은 현행 건축조례에 건폐율 30%, 층고는 3층 12m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, 대지 최소 면적은 200m<sup>2</sup>로 하고 있습니다.

위의 건축기준은 일제시대 이후 일관되게 지켜져 온 원칙이기도 합니다. 비록 학교나 관공서, 고급호텔 등은 권력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일부 완화된 건축조건을 부여받아 건축하였다고는 하나 일반주택의 경우 위와 같은 건축조건은 엄격히 지켜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.

낙산공원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. 동승동 50-111 일대 시민아파트는 92년 2월 시에서 동승시민아파트 정리지침이 시달 되었으나 거주주민 85%가 철거를 반대하여